

2026년 중랑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안내

1. 사업 안내

- ◆ 목적
: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확장 및 지속성 확보
- ◆ 지원 대상
: 서울생활권 1인가구 ※단체 신청의 경우 3인 이상
- ◆ 지원 규모
: 모임원 1인당 최대 200,000원 지원
: 1인당 회기별 30,000원 / 월 50,000원 이내 사용 가능
- ◆ 지원 불가 항목
: 주류 구입, 자산성 물품, 그 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
※ 하단 예산기준표 확인
- ◆ 참여 제한 대상
: 영리사업, 종교적, 정치적 모임
: 타 자치구 동일 사업 중복 참여자
: 중랑구 사회적관계망 사업 3년 연속 참여자
- ◆ 지원 취소 사항
: 동아리 활동 제한 내용 발견 시
: 활동보고서 등 서류 제출 2회 이상 지연 시
: 타 자치구 중복 참여 시
: 1인가구지원센터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상황 발생 시
: 기타 센터에서 모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
※ 지원 취소 및 중도 해체의 경우
지원금 일부 환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◆ 유의사항
: 모임활동 월 1회 이상 필수 진행(총 6회기 이상)
: 봉사활동 등 공익 목적의 모임은 우선선정
※ 일반 모임의 경우도 공익 목적 활동 1회 이상 필수 진행
: 선정 후 1인가구 증빙 필요(주민등록 등본)
: 활동 진행 시 3인 이상 모임 필수(2인 이하 활동 불가)
: 센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,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.

2. 신청 안내

- ◆ 단체 신청
 - ① 모임원 모집
 - ② 신청서 작성(서식 내 예시, 예산기준표, 사업안내 참고)
: 모임장(담당자 소통, 보고서 관리), 총무(활동비 관리) 지정
: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 1회 이상 포함 필수
: 신청서,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(타이핑, 공란 신청 불가)
 - ③ 신청서 이메일 제출
: jungnang4142@naver.com
: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 양식 [서로이웃 신청_모임명]
- ◆ 개인 신청
 - ① 사업 안내 확인
 - ② 구글폼 신청
: <https://forms.gle/WwKx9GeKMi27rVnq6>
: 작성 양식 준수
- ◆ 오리엔테이션
 - ① 단체 모임 (온라인 zoom)
: 모임장 참석 후 모임원들에게 내용 전달 및 활동 진행
 - ② 개인 모임 (대면)
: 전체 인원 참여 필수, 참여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사업 예산 기준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액	비고
강사비	'2026년 가족사업 안내'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름	[일반 III] - 1시간 이내: 150,000원 - 초과 매 시간당: 50,000원	- 강의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- 사회적 관계망 모임 참여자에게는 강사로 지급 불가 - 강사이력서, 강의 계획서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제출 - 기타소득세 정산을 위해 강사비는 자치구센터에서 이체
식비·다과비	- 1인	13,000원	- 활동 사진, 활동보고서 ※ 예외: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재료비로 인정 가능 ※ 비대면 시 사용 불가
시외 교통비	- 운임비	실비	- 시외/고속버스, 철도, 항공 운임만 해당 ※ 시외/고속버스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출/도착하는 버스를 의미,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은 제외 - 현지 택시, 시내버스는 미포함 - 교통카드, 유류비 지급불가
숙박비	- 1인	20,000원	
재료비	- 재료비	실비	- 구입물품 사진
교육비	- 교육비	실비	-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며, 참여자 역할에 따라 필요시 지원
체험비	- 체험비	실비	
대여비	- 대여비	실비	- 대여물품 사진
대관비	- 대관비	실비	- 대관 장소 사진 - 이체 시: 사업자등록증, 계좌이체확인증 제출
인쇄비	- 현수막 제작 - 교재 제작	실비	- 인쇄물사진, 견적서, 홍보인쇄물 시안
도서 구입비	- 도서구입비	실비	- 구입도서 사진 - 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 ※ 예외: 독서모임 등 도서구입이 교육재료비 인정되는 경우
보험비	- 보험비	실비	- 여행 및 탐방 시 상해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- 보험증권사본, 계좌이체확인증
입장료	- 입장료	실비	- 입장권, 참석자명단
우편료	- 우편료	실비	- 자치구센터 자료 제출 시

※ 기타사항

- 세금계산서,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 기본 증빙서류 제출은 각 항목별 공통 사항
- 명확한 산출 근거 및 용도와 목적 명시
- 부득이 상기 항목 이외 및 금액 초과한 사업비 사유 명기하고,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 조정
- 증빙자료는 사진(활동 내용, 구입물품 등)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금전등록기 영수증, 온라인 이체 확인증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이며, 영수증에는 거래내역(품목) 기재, 카드전표는 거래내역서 첨부
- 사회적 관계망 모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**환수 조치**

< 의무적 제한업종 > (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4, 지방보조사업비 사용제한 업종)

- 유흥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)
 - 일반유흥주점 : 룸싸롱, 단란주점, 가라오케, 가요주점, 요정, 비어홀, 바 등
 - 무도유흥주점 : 클럽, 극장식 주점, 나이트클럽, 스텐드바, 카바레 등
 - ※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'기타주점'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(권고)
- 위생업종 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

